

# 韓國建築設計競技規準

## 第1章 總 則

### 第1条 (目的)

本規準은 建築物이나 建築과 類似한 構造物의 設計를 公開 또는 指名設計設計로 하고자 할 때 建築主, 応募者, 協力機關 및 審査委員의 責任, 權利, 任務 및 義務를 規定하여 建築主와 応募者間의 關係를 公正히 하고 競技秩序를 確立하며 建築藝術文化의 發展과 著作權의 尊嚴性을 높이는 데 그 目的이 있다.

### 第2条 (用語定義)

本規定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이 規準에서 公開設計競技라 함은 建築主가 參加資格을 特定人의 制限없이 懸賞応募케 하는 行爲를 말한다.
- ② 이 規準에서 指名設計競技라 함은 建築主가 參加資格을 特定한 法人, 自然人에게 局限시켜 施行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이 規準에서 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라 함은 大韓建築學會, 韓國建築家協會 및 大韓建築士協會에서 選出된 設計競技運用機構를 말한다.

### 第3条 (適用範圍)

- ① 國家機關의 建物中 特殊建物 或은 國家와 民族의 象徴的 建物은 設計競技를 行하여야 한다.
- ② 個人이나 團體의 建物이라도 ①項에 類似한 建物은 設計競技를 行하여야 한다.
- ③ ①, ②項 以外의 建物이라도 設計競技를 行하여야 한다고 公認되는 建物은 設計競技를 行하여야 한다.

### 第4条 (運用 및 機關)

- ① 本規準은 前記한 設計競技가 發生하였을 경우 適用한다.
- ② 本規準은 韓國 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가 運用한다.

### 第5条 (當選者와 實施者)

建築主는 設計競技의 最高得点者(1等當選者)를 本設計 및 工事監理의 担当者로 指名하여야 한다.

- ① 設計競技의 當選者가 建築士法第25條의 規定에 依한 建築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建築士일 경우 建築主는 當選者를 本設計 및 工事監理者로 指名하여야 한다.
- ② 當選者가 建築士法第25條의 規定에 依한 事務所의 設計登錄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事務所開設登錄을 할 수 없는 처지일 경우 當選者는 建築物의 本設計 및 工事監理의 業務를 建築士法第25條의 規定에 依拠 事務所開設登錄을 한 建築士를 選定協同設計한다. 著作權은 當選者에게 歸屬된다.

### 第6条 (建築主)

- ① 建築主는 設計競技에 回付코져 하는 建築物의 確固不動한 計劃을 세워야 한다.
- ② 建築主는 競技計劃의 第1次 段階로 競技에 関한 모든 技術 및 行政的 諮問機構를 設定할 수 있다.
- ③ 技術 및 行政諮問을 委囑받은 建築家는 競技를 完全無缺하게 하기 위하여 競技計劃書(本規準에 付合되는 것으로 三團體 運用委員會의 承認을 獲得) 競技運營, 建築主에의 諮問, 審査, 進行, 協助等의 任務와 責任을 진다. 그러나 審査에 參加하거나 意見을 陳述할 수 없다. 以下 本條의 諮問委囑을 받은 建築家를 技術顧問이라 稱한다.
- ④ 建築主는 必히 審査委員으로 하여금 當選者를 選定케 하여야 한다. 當選者 該當이 없을 때는 最高得点者에게 當選者와 同一한 權利를 賦與하여야 한다.
- ⑤ 建築主는 応募者와 審査委員에게 同一한 內容의 事實만을 알려 주어야 한다.
- ⑥ 公告, 登錄, 現場說明 및 作品接受는 韓國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 規準에 一致되어야 한다.

다.

⑦ 当選作 以外の 優秀作品을 若干 選定 할 수 있으며 建築主는 充分的 製作費를 支払하여야 한다.

**第7条 (参加制限)**

建築主 및 競技計劃에 關係한 者는 競技에 参加하거나 応募者에게 協力할 수 없다.

**第8条 (手数料 및 報酬)**

設計 및 工事監理担当에 對하여는 大韓建築士協會의 「建築設計料率基準」에 따라 報酬를 支払한다. 指名競技參加者의 參加報酬는 1人당 當該設計報酬의 5% 以上, 公募의 경우는 當選者 또는 最高得点者에게 支払되는 手数料 總額은 設計費의 20% 以上으로 한다. 前記한 報酬나 手数料는 實施設計 및 工事監理報酬와는 無關하다. 또한 建築主는 審査決定 發表後 一定한 期間內에 建築이 實施되지 않는 境遇에 當選者 또는 最高得点者에게 充分的 報償金을 支払해야 한다.

**第9条 (顧問 및 審査報酬)**

技術顧問의 報酬는 勿論 要求된 일에 比例하나 技術顧問은 全的으로 많은 時間을 이에 專心하므로 充分한 報酬가 주어져야 한다. 勿論 公的인 費用은 이에 包含되지 않고 別途支払된다. 審査委員의 報酬는 旅費等 公的인 費用外에 1人당 設計費의 1% 以上으로 한다. 外國人의 境遇도 實情에 맞는 報酬 및 公的인 費用을 支払하여야 한다.

**第10条 (審査費用)**

審査에 要하는 諸費用은 建築主의 負擔으로 한다.

**第11条 (審査委員會)**

① 審査委員會는 三名 以上으로 構成하며 그 三分之二 以上은 設計 및 工事監理의 經驗이 豊富한 一級 建築士로서 高貴한 人格의 所有者로 한다.

但, 外國의 著名한 建築家도 招聘할 수 있다.

② 審査委員會는 一名의 委員長을 選出하며 委員會의 運營을 주관한다.

**第12条 (審査委員에 對한 制限)**

審査委員 및 審査委員과 特定한 關係가 있는 者는 審査의 公正을 害할 憂慮가 있으므로 応募하거나 応募者를 援助 或은 當該 建築物의 設計 및 工事監理에도 關與할 수 없다.

**第13条 (審査方法)**

審査委員會는 本規準에 一致하는 自体 審査規準을 作成하여 進行할 수 있다.

**第14条 (審査報告 및 發表)**

審査委員會에서 決定된 事項의 報告는 委員長이 建築主에게 通告함과 同時 委員長名義로 當選案의 決定을 公表한다.

審査에 關係된 모든 責任은 審査委員會가 지며 이에 따르는 諸費用은 建築主가 負擔한다.

**第15条 (設計競技応募要領)**

設計競技応募要領은 韓國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의 內規에 따른다.

**第16条 (応募者의 登錄)**

公募나 指名競技의 境遇 応募者는 競技 主催者에게 登錄하고 設計競技応募要領書를 交付받아야 한다.

**第17条 (質疑応答)**

応募者는 設計競技要領書나 応募事項에 疑問點이 있으면 技術顧問에게 書面으로 問疑할 수 있으며 이를 檢討하여 妥當性을 認定하면 이를 即時 全応募者에게 公平히 傳達하는 同時에 応募要領의 一部로 한다.

**第18条 (著作權)**

応募設計圖書의 著作權은 該案提出 応募者에게 歸屬한다.

但, 1等 當選案은 當該 建築物에 限하여 1回 限 關係된 使用權을 主催者에게 歸屬한다.

**第19条 (応募案의 禁止事項)**

応募案에는 姓名, 暗号等 어떤 種類의 標識도 할 수 없다.

**第20条 (応募案의 失格)**

応募案中 審査委員會가 定한 內規에 어긋나는 案을 失格시킬 수 있다.

**第21条 (応募案의 公開展示)**

參加된 모든 応募案은 審査 結果를 公表하기 爲하여 審査報告書와 同時에 一定 期間 一般 에게 公開展示한다.

그러나 案이 많을 때는 그 數를 制限할 수 있다.

**第22条 (作品返還)**

當選案을 除外한 모든 応募案은 公開展示后 二週日以内에 建築主 負擔으로 応募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.